



정책 제목: **계정 청구, 지불, 수수료 및 차단**
정책 번호: **2100**

2100 정책 목적 및 적용

이 정책은 "수도 차단 보호법"으로 알려진 상원 법안 998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8년 9월 28일에 주지사가 승인했습니다(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 섹션 116900, 이하 참조). 이 정책은 Esparto Community Services District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 (530) 787-4502로 연락하여 이 정책의 조건에 따라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종료를 방지하는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과 교육구의 다른 조례, 규칙, 규정 또는 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이 정책이 우선합니다. 이 정책과 주법이 충돌하는 경우 주법이 우선합니다.

2100.1 학군의 현금 흐름에 중요한 미수금 계정을 매월 검토하는 것이 학군의 정책입니다.

2100.2 서비스 구축 또는 이전

- a) 계정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서비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이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궁극적으로 지구에 빚진 모든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또는 서비스 사용자가 소유자의 부동산 주소에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 b) 서비스 신청 시 교육구는 신청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c) 각각의 새 계정에 대해 계정 개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첫 달 청구서에 청구됩니다.

- d) 지역구에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고 부지를 점유하고 수도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마지막으로 기록된 검침일로부터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그렇게 하도록 통보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적절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축적된 서비스 청구서를 제출 시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e) 서비스 주소와 관련된 모든 잔액은 동일한 주소에 새 계정을 개설하기 전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2100.3 청구, 미지급금, 연체 및 수수료

- a) 계정은 매월 청구됩니다. Billing for Accounts는 매월 5 일 이전에 지역 사무소에 기록된 고객의 서비스 주소 또는 요청한 우편 주소로 우송됩니다 .
- b) 제공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각 청구서에는 상하수도 및/또는 가로등에 대한 별도의 월별 서비스 요금이 포함됩니다. 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경우 각 청구서에는 전월의 미터 수치로 결정된 물 사용량이 포함됩니다.
- c) 결제는 매월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매월 말일까지 지불 및 수령되지 않은 계정은 다음 청구 월 1일에 연체 및 체납으로 간주되어 10%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달 요금에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 d) 두 번째 달의 말일까지 지불 및 수령되지 않은 계정은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30일 연체 및 연체로 간주되며 첫 번째 달 연체에 대해 추가 1%, 추가 연체에 대해 추가 10%가 부과됩니다. 연체가 되는 두 번째 달은 이 청구서의 계정에 추가됩니다.

- e) 지불되지 않은 계정은 30일 이상 연체된 각 월에 대해 추가 1%가 계속 부과되고 연체가 되는 각 후속 월에 대해 1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 f) 연체 및 체납으로 간주되는 계정에 대한 매월 위약금 및 이자는 다음 달 청구서에 포함됩니다. 이 청구서에는 계정의 연체 금액이 표시됩니다.

청구 및 연체 예

월	청구 날짜	청구 기한	상태 및 조치
1	7월 1일	7월 31일	
2	8월 1일	8월 31일	7월 청구서가 8월 1일에 연체되었습니다. 7월 요금에 대한 10% 벌금은 8월 청구서 명세서에 표시됩니다.
삼	9월 1일	9월 30일	7월 청구서는 9월 1일 기준 30일 연체입니다. 8월 요금에 대한 10% 위약금과 7월부터 남은 잔액에 대한 1% 이자가 9월 청구서 명세서에 표시됩니다.
4	10월 1일	10월 31일	7월 청구서는 10월 1일 기준 60일 연체입니다. 9월 요금에 대한 10% 벌금과 8월 및 9월 잔액에 대한 1% 이자가 부과됩니다.

2100.4 미결제에 의한 서비스 중단

- a) 연체 계정은 고객이 최소 60일 동안 연체 상태이고 연체 금액이 \$25.00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 칠(7) 영업일 전에 지역구는 계정에 이름이 기재된 고객에게 전화나 서면 통지 또는 둘 다를 연락해야 합니다.
- b) 지불 연체 및 임박한 중단에 대한 서면 통지는 고객의 기록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고객 주소가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주소가 아닌 경우, 통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주소인 "거주자"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 고객의 이름과 주소.
 - ii) 연체 금액입니다.
 - iii)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준비가 필요한 날짜로, 청구서가 연체된 날로부터 최소 60일이어야 합니다.
 - iv) 종료 통지가 인쇄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칠(7)일이 만료되면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진술.
 - v) 연체 요금 납부 기한 연장 요청, 청구서 검토 및 항소 청원, 대체 납부 일정 요청 절차에 대한 설명.
 - vi) 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교육구의 서면 정책에 대한 교육구의 전화번호 및 웹 링크.
- c) 지역구에서 전화로 고객 또는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과 연락할 수 없고 서면 통지가 배달 불가로 우편으로 반송된 경우, 지역구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떠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 잘 띄는 장소 배치, 미납 시 수도 서비스 중단 임박 통지 및 미납 시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교육구 정책.
- d) 그러한 체납금이 완전히 지불되지 않았거나, 대체 지불 계약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청구서 검토 및 항소에 대한 청원이 교육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상기 칠(7) 영업일이 만료될 때 교육구는 수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추가 공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 일반 영업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지역구의 사무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시간에 오후 3시 이후에는 요금 미납으로 인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f) 교육청은 다음 상황에서 미납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 i) 고객 분쟁 또는 불만에 대해 지역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 ii) 고객이 대금 납부 기간을 연장한 경우.
- iii) 고객이 지구와 할부 상환 계약 또는 대체 지불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모든 지불이 유효한 경우.
- iv) SB998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 1차 진료 제공자의 인증(해당 용어는 복지 및 기관법 14088항 하위 절 (b)의 단락 (1)의 하위 단락 (A)에 정의됨) 수도 서비스는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거주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 (2) 고객은 교육구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수도 서비스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고객의 가족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생활보조금/주 보충 지불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경우 고객은 지역구의 일반 청구 주기 내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또는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이백(200) 퍼센트 미만임을 선언합니다.
 - (3) 고객이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해 할부 상환 계약, 대체 지불 일정 또는 연기 지불 계획을 체결할 의향이 있습니다.
- v) 위에 나열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구는 고객에게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합니다.
 - (1) 미납 잔액 상각
 - (2) 대체 지불 일정에 참여.
 - (3) 일시적인 지불 연기.

2100.5 대체 지불 방식

- a) 고객은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구서 마감일의 오후 5시 이전에 전화나 서면으로 지역구에 연락하여 특별 지불 준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b) 총지배인은 전체 잔액을 지불하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불하거나 최대 2주 동안 전체 잔액의 지불을 연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특별 지불 방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c) 수도 서비스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지역구가 건물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최종 통지를 게시한 후 영업일 기준 칠(7)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이 육십(60)일 이상 연체 요금에 대한 할부 상환 계약, 대체 지불 일정 또는 연기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 ii) 분할 상환 계약, 대체 지불 일정 또는 체납 요금 연기를 수행하는 동안 고객은 육십(60)일 이상 현재 수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100.6 수도 서비스 복구

- a) 미납으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60일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위약금 및 이자를 포함)을 모두 납부하고 재연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b)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이백(200) 퍼센트 미만임을 지구에 입증하는 주거 고객의 경우 지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i) 정상 운영 시간 중 재연결에 대한 서비스 재연결 수수료는 정상 업무 시간 동안 50달러(\$50) 또는 정상 업무 시간 외에 150달러(\$1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 ii) 12개월에 한 번씩 연체 청구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iii) 가구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생활보조금/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주 보충 지불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또는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이백(200) 퍼센트 미만임을 선언합니다.

c) 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중단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결제가 가능하며, 계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구는 계정이 폐쇄된 후 징수를 위해 징수 서비스 또는 세금 롤을 통해 청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2100.7 집주인-임차인 관계와 관련된 서비스

A. 구역이 17008항에 정의된 대로 분리된 단독 주택, 다세대 주거 구조물, 이동 주택 공원 또는 노동 수용소의 영구 주거 구조물의 주거 거주자에게 개별 계량식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 주택, 구조물 또는 공원의 고객이 기록상 고객인 경우, 지구는 계정이 연체될 때 서비스가 최소 10(10) 해지 전 일. 서면 통지는 거주 거주자에게 연체 계정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추가로 알려야 합니다.

B. 교육구는 각 주거 거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법률 및 교육구의 조례, 결의, 규칙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주거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주거 거주자가 서비스에 대한 교육청 신청 완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청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정의 후속 요금에 대해 책임을 질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따라서 총지배인 또는 피지명인은 거주 신청자가 서비스 약관을 충족할 수 있다고 교육구가 만족하는지 또는 교육구가 다음과 같은 주거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종료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역구는 서비스 약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만족하는 주거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100. 8 법안 검토, 항소 및 계정 조정

- a) 고객이 청구서 검토 또는 항소를 원하는 경우 고객은 지불 기한의 오후 5시 이전에 지역구에 연락해야 하며 지역구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고객은 총지배인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이사회 회의 최소 칠 (7)일 전에 항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사회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교육구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b) 계정 조정은 총지배인과 이사회회의 재량으로 제한됩니다. 조정 요청은 총지배인이 작성하고 승인해야 하며 요청 시 이사회와 지역 감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정 조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 다음에 대한 크레딧 조정:
 - i. 벌금 및 이자 환급
 - ii. 결제 수정
 - iii. 누수
 - iv. 기타 기타 크레딧 또는 요금
 - b. 차변 조정:
 - i. 결제 수정
 - ii. 반환된 수표
 - iii. 가입비
 - iv. 연결 해제 및 재연결 수수료
 - v. 기타 차변

2100. 9 수수료

이사회 정책 번호 2100
채택/개정: 2022년 11월 16일
정책 2101 및 3036 대체



- a) 다음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a. 계정 활성화
 - b. 미납으로 인한 연결 해제
 - c. 미결제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재접속
 - d. 반환된 수표
 - e. 계량기, 계량기 잠금 장치 또는 기타 학군 재산에 대한 고의적 손상
- b) 수수료는 지구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2100.10 연체 요금의 안전한 징수를 위한 기타 조치

- a) 정부법 섹션 61115(b)에 따라 교육구는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 목록에 연체료 및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b) 정부법 제61115조에 따라 이사회는 총지배인 또는 피지명인이 연체 요금 및 벌금 금액과 연체 요금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름 및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선언하는 인증서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총지배인이 설정한 절차에 따라 Yolo County Recorder 사무실에 해당 인증서를 기록합니다. 해당 절차에는 고객에게 교육구의 의도를 알린 후에만 인증서를 기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c) 교육구는 제3자 징수 대행사를 통해 연체 요금 징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2100.11 자발적 서비스 중단

- a) 고객은 서비스 연결 해제를 요청하고 마감 청구서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달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해제 요청을 받으면 요청한 유효 날짜 중 늦은 날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최종 계량기 검침이 완료됩니다.

- b) 최종 계량기 검침일까지의 사용 요금을 포함한 최종 마감 청구서는 전달 주소로 발송됩니다. 고객은 최종 계량기 검침일까지의 모든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남은 잔액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c) 서비스 주소가 비게 되면 서비스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일반 최소 요금이 부과되고 징수됩니다. 교육구가 서비스 중단을 승인하면 계정은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 c) 서비스 연결 해제 요청을 받은 후 서비스 주소에 새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주소를 방문하여 떠나거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배치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새 계정이 생성될 때까지 수도 서비스의 임박한 중단 통지. 새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영업일 기준 칠(7)일이 만료되면 교육구는 추가 통지 없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 d) 서비스 주소와 관련된 모든 잔액은 동일한 주소에 새 계정을 개설하기 전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2100.12 보고 요건

교육구는 지불 불능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건수를 교육구의 웹사이트와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2100.13 이 정책의 제한

- a) 이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고객의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정책에 명시적으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이유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교육구의 능력을 제한, 제한 또는 달리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2100.14 참조를 위한 기타 관련 정책



a) 회계 정책 및 절차 섹션 3.10 미수금 계정

이사회 정책 번호 2100
채택/개정: 2022년 11월 16일
정책 2101 및 3036 대체